

예 산 총 칙

2024년도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
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892,582,000	26,777,460
일 반 회 계	869,200,000	26,076,000
일 반 회 계	869,200,000	26,076,000
특 별 회 계	23,382,000	701,460
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1,600,000	48,000
지 하 수 관 리 특 별 회 계	480,000	14,400
폐 기 물 처 리 시 설 설 치 사 업 특 별 회 계	7,865,000	235,950
기 반 시 설 사 업 특 별 회 계	174,000	5,220
주 차 장 특 별 회 계	13,263,000	397,89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819,326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319,326천원, 목적예비비 2,500,000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8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
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
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